#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62 발의연월일: 2023. 7. 3.

발 의 자 : 이수진(비) · 김정호 · 김홍걸

박상혁•박 정•이개호

이동주 • 이정문 • 임종성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정성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지만,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예방, 강수의 침투·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11조).

- 바.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 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물순환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5조).
- 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 차. 환경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설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35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 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나.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 마.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2)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시책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물순환 촉진을 도모하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한다.
-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계획

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기준
-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위칙
-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 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 방침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사업의 파급효 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 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물순환 촉진사업이 수자원의 원활한 이용과 개발·보전, 재해의 경감·예방 또는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이 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등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
- 4.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물분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 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 가. 사업의 내용 기간
    - 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 3. 기대효과
-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종합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

로 보며, 제4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 본계획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 4.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 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 5.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 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7.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 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변경
- 8. 「하수도법」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10조(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4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물순환촉진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 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

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1. 사업의 명칭과 목적 · 필요성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계획의 개요
-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7.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

-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의·인가·신고·면허·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 다.
-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 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사업관리 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1.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 관리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총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수 있다.
  -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 립 지원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 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 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 ④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기술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 · 정보 등의 교류
  -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 2.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3. 조사 · 연구 · 홍보 · 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 4. 관련된 정보의 수집 · 분석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6.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 칙

제26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 · 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 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

- 다)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 재산·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 ④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물순환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 제2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 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

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 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

- 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행한 것으로 본다.
-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 기술인증원
- 5.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 제5장 벌 칙

- 제35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한다.

#### [별표]

####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제1항 관련)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 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 6.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 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 水)의 사용허가
-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 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에 관한 협의
-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 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4.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

- 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의 인가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25.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변경)
- 27.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제8 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신고
- 28.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 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